

신상정보 공개 결정 확인서

- 본인은 (죄명) 사건에 대한 . . . 자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다.
- 본인은 위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표시하면 「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7항 단서에 따라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습니다.

년 월 일

확인자

(서명 또는 인)